

##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(LINC 3.0) 사업단 운영규정

### 제1장 총칙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교육부 「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(LINC3.0) 운영규정」에 따라 경운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(LINC3.0) 사업단(이하 “사업단”이라 한다)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사업단의 기능)** 사업단은 총장 직속 기구로 산학연협력 선도모델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비전 및 산학연협력 체제 : 산학연협력 비전 수립, 산학연협력 체제 구축
2. 인력양성 : 산학연 연계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산학연협력 교육환경과 지원체계 구축
3. 기술개발 및 사업화 : 특화분야 산학협력 브랜드 창출, 산학연협력 가치 창출
4. 공유·협업 : 기업연계 기반 공유 협업 활동, 공유·협업 플랫폼 구축 및 운영
5. 지속가능성 : 성과관리 운영 및 사업의 지속가능성 도출

### 제2장 사업단 구성 및 관리

**제3조(사업단장 등)** ① 사업단장은 본교 전임교원 중 교무위원급으로 보한다.

② 사업단장의 임기는 총 사업기간으로 한다. 다만, 사망, 공직임명, 퇴직, 질병 및 기타 사유로 사업단장의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 사업단장을 교체할 수 있다.

③ 단장을 보좌하기 위해 부단장을 2명 이내로 둘 수 있으며, 사업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, 임기는 총 사업 기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④ 사업단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.

1. 사업계획서의 작성, 과제の内容 및 수행방법 결정
2. 사업의 총괄 수행
3. 사업비 사용을 위한 발의 및 관리
4. 사업 수행과정의 조정 및 감독
5. 사업 결과 및 사업비 사용실적의 보고
6. 사업단 자체 운영규정의 제·개정안 발의

7. 사업 실적 및 성과의 홍보·확산
8. 사업 참여 구성원에 대한 성과평가 및 인사추천
9. 관계 법령의 준수
- ⑤ 사무국장은 직원들의 업무를 조정하며 사무행정 업무를 총괄한다.

**제4조(구성)** ① 사업단은 제 2조의 산학협력 선도모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본부, 부 및 센터등 사업단 조직을 둔다.

- ② 사업단 산하의 본부, 부 및 센터에는 본부장, 부장, 센터장, 직원을 둘 수 있다.
  1. 성과관리부
  2. 산학교육본부 : 산학교육지원센터, 신산업융합교육센터
  3. 공유협업지원센터: 공유협업지원센터, 글로벌공유협업지원센터
  4. 산학연협업지원센터
  5. 창업지원센터
  6. ICC지원센터 : 항공기계전자 ICC, UAM 운영 ICC, 차세대 안전기술 ICC
  7. 공용장비 운영센터
- ③ 본부, 부 및 센터에는 본부장, 부장 및 센터장을 두며,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사업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여 연임할 수 있다.
- ④ 본부 및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우 부분부장 및 부센터장을 둘 수 있으며,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사업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여 연임할 수 있다.

## 제3장 사업단 운영

### 제1절 각 위원회

**제5조(임기)** 각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사업기간 동안 중임할 수 있다.

**제6조(LINC 3.0위원회)** ① 사업단은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을 심의·조정하기 위하여 LINC3.0위원회를 두고,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사업 총 예산 및 결산 심의
2. 사업 예산 중 항목 간 예산변경 심의
3. 기타 사업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
- ② LINC 3.0위원회는 교내 LINC 3.0사업 관련 조직의 장을 포함한 교수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총장이 된다.
- ③ LINC 3.0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- ④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22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총장이 된다.

**제7조(LINC 3.0운영위원회)** ① 사업단은 사업수행 및 성과관리를 위하여 LINC3.0운영위원회를 두고,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후 LINC 3.0위원회에 보고한다.

1. 사업 예산 중 항목 내 예산변경 심의
2. 3,000만원 미만 기자재 도입 계획 심의

② LINC 3.0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은 사업단장이 되고 부단장, 본부장, 부장, 센터장 및 사무국장으로 구성하며, 별도의 외부위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③ 사업단장은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하여 대학본부 실무자 회의 등을 별도 운영할 수 있다.

**제8조(자체평가위원회)** ① 사업단은 사업 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하여 자체평가위원회를 설치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한다.

② 자체평가위원회는 사업단장이 위촉하는 산·학·연·관 전문가 13인 이내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사업단장이 된다.

③ 자체평가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1/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④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**제9조(실무추진위원회)** ① 사업 실무 추진을 위하여 ‘실무추진위원회(이하 ‘위원회’라 한다)’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사업단장이 위촉하는 학과별 산학담당교수, 사업단 보직자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사업단장이 된다.

③ 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, 연임할 수 있다.

④ 위원회는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하며,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.

**제10조(산학협력협의회(혁신클러스터))** ① 효율적 산학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를 위하여 ‘산학협력협의회(이하 ‘혁신클러스터’라 한다)’를 둔다.

② 혁신클러스터는 각 개별 미니클러스터의 고문, 회장, 부회장, 총무 및 간사로 구성하며 혁신클러스터 회장은 혁신클러스터 협의회에서 학기 초에 선출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
③ 혁신클러스터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 회원 1/3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.

④ 혁신클러스터 협의회는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⑤ 혁신클러스터를 구성하는 미니클러스터와 가족회사에 관한 내용은 별도의 지침으로 관리한다.

**제11조(장비도입심의위원회)** ① 사업단은 사업수행에 필요한 장비도입을 심의하기 위하여 ‘장비도입심의위원회(이하 ‘위원회’라 한다)’를 두고,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후 LINC 3.0위원회

에 보고한다.

1. 3,000만원 이상 기자재 도입 계획 심의
- ② 위원회는 사업단장이 위촉하는 산·학·연·관 전문가 7인 내외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사업단장이 된다.
-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, 연임할 수 있다.
- 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1/3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- ⑤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## 제2절 부 및 각 센터

**제12조(성과관리부)** ① LINC3.0의 효율적인 성과관리를 위하여 사업단 내 성과관리부를 둔다.

- ② 성과관리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  1. LINC3.0 각종 위원회 구성에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
  2. 성과지표 모니터링 및 총괄 평가 관리에 관한 사항
  3. 성과분석과 자체평가 결과의 개선에 관한 사항
  4. 사업실적보고서 평가 및 사업비 회계에 관한 사항
  5. 사업단 행사·운영에 관한 사항
  6. 산학협력 역량 강화 및 교육 및 워크숍 분석에 관한 사항
  7.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

**제13조(산학교육지원센터)** ① 현장실습 등 산학연계교육의 원활한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사업단 내 산학교육지원센터를 둔다.

- ② 산학교육지원센터는 교육과정에 의거 산학연계교육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  1. 산학연계교육 시행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
  2. 산학연계교육 운영, 지원 및 조정에 관한 사항
  3. 산학연계교육 교과목 운영 및 신규 개발에 관한 사항
  4. 산학연계교육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
  5. 산학연계교육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산학연계교육 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
  6. 기타 상기 업무와 관련이 있는 업무에 관한 사항

**제14조(신산업융합교육센터)** ① 신산업융합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업단 내 신산업융합교육센터를 둔다.

- ② 신산업융합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  1. 산업융합교육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

2. 실무형 교육과정 업무에 관한 사항
3. 기타 산학협력 친화적 교과 운영에 관한 사항

**제15조(창업지원센터)** ① 창업강좌 개설, 콘텐츠 제공 및 창업동아리 발굴 등 대학 창업교육 및 지원의 운영을 위하여 사업단 내 창업지원센터를 둔다.

- ② 창업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  1. 창업교육 및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
  2. 창업교육 및 지원의 통합지원 및 조정에 관한 사항
  3. 창업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 개발, 보급 및 확대에 관한 사항
  4. 창업문화 확산을 위한 행사, 연구 활동의 기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
  5. 창업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창업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
  6. 대학원 창업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
  7. 대학 내 교수, 학생 창업 지원을 통한 가치 창출에 관한 사항
  8. 기타 상기 업무와 관련이 있는 업무에 관한 사항

**제16조(산학협력지원센터)** ① 산업기업인력의 기술역량 증진 및 인적교류 확대 성과 창출을 위해 산학협력지원센터를 둔다.

- ② 산학협력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  1. 산업체연계 교육과정 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
  2. 재직자교육 및 특강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
  3. 평생교육원 교육 및 기술교류회 운영에 관한 사항
  4. 비학위과정 및 각종 단기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
  5. 기타 상기 업무와 관련이 있는 업무에 관한 사항

**제17조(ICC지원센터)** ① 가족회사와의 연계를 통한 기업지원사업 활성화 및 성과 창출을 위해 사업단 내 ICC 지원센터를 둔다.

- ② ICC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  1. 항공기계·전자 ICC, UAM 운영 ICC, 차세대안전기술 ICC 지원에 관한 사항
  2. 산학협력 수요발굴, 연구개발 및 시제품지원에 관한 사항
  3. 미취업 인턴 및 재학생 인턴업무에 관한 사항
  4.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, 기술지도, 경영컨설팅 및 해결에 관한 사항
  5. 산학협력 인력교류 및 산·학·연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
  6. 가족회사 및 특화 ICC 클러스터 관리에 관한 사항
  7. 기타 산학협력 지원과 관련이 있는 업무에 관한 사항

**제18조(공유협업지원센터)** ① 산학협력 업무를 지원하고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기업협업, 지원 업무에 관한 활동 도출을 위해 사업단 내 공유협업지원센터를 둔다.

- ② 공유협업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  1. 대학과 산업체, 대학과 대학 간의 산학협력 자원 개방, 공유 및 협업을 통한 산학협력

## 연계강화

2. 산학협력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
3. 기업 맞춤형 재직자 교육 과정 개발, 운영 및 지원
4. 대학 내 산학협력 자원 및 네트워크의 종합적 연계
5. 산학협력 포럼 행사 운영
6. 공유협업 플랫폼 구축 및 운영
7. 연구재단 산하 산업교육센터와 연계 사업 지원 및 운영
8. 대학운영공동체 계획 및 운영비 집행
9. 기타 산학연 협업 활성화를 위한 공유·협업 업무 등

**제19조(글로벌 공유협업지원센터)** ① 실무중심의 현장형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하여 글로벌 교육 센터를 둔다

- ② 글로벌 공유협업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  1. 글로벌 인재양성 프로그램 운영
  2. 글로벌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사항
  3. 글로벌 산학교류센터 업무에 관한 사항
  4. 해외기업 및 대학과의 대회협력에 관한 사항
  5. 기타 글로벌 공유·협업 관련이 있는 업무에 관한 사항

**제20조(공용장비운영센터)** ① 공용장비를 활용한 사업성과 창출을 위하여 공용장비운영센터를 둔다.

- ② 공용장비운영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  1. 장비 수요조사, 도입 및 홍보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
  2. 장비운영관리 및 활용실적 관리에 관한 사항
  3. 장비 자산관리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
  4. 기타 상기업무와 관련이 있는 업무에 관한 사항

## 제4장 사업비 집행 및 관리

**제21조(사업비)** ① 사업단은 교육부 및 한국연구재단의 사업비로 운영한다.

- ② 사업비의 관리와 회계는 교육부의 3단계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(LINC3.0)운영규정 및 사업비 운영 지침에 따른다.
- ③ LINC3.0 위원회는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회의비 집행을 할 수 있다.

**제22조(성과급 및 지급방법)** ① LINC 3.0사업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인력의 사업 수행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.

- ② 성과급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지급 대상자의 사업 기여도를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

기준을 마련하여 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여야 한다.

③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단장이 별도로 정하여 총장의 승인을 득한 후 집행한다.

## 제5장 행정사항 및 보칙

제23조(문서관리) 경운대학교에서 정한 문서관리규정에 따라 관리한다.

제24조(결과물처리) 사업단의 사업 수행으로 발행한 결과물(작품, 도서 등)은 총장의 승인을 득하여 처리하도록 한다.

제25조(기타) ①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LINC3.0사업 운영에 관한 관계법령 및 우리대학교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.

②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사업단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### 부 칙<2022.09.01.>

제1조(시행일) 본 규정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본 사업의 시작일로부터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진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.